[서식 예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(담보교체)

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 전화·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○○지방법원 ○○등기소 20 ○○. ○. 접수 제○○○○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○○. ○. ○. 합의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소외 ●●●의 소유였습니다. 그런데 원고는 20 ○○. ○. ○. 소외 ●●●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시 계약금 ○○○원, 20○○. ○. ○. 중도금 ○○○원, 20○○. ○. ○. 잔금 ○○○원을 지급하여 소외 ●●●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20○○. ○. ○.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.
- 2.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피고 ◇◇◇,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소외 ◉◉◉, 채권최고액 ○○○원의 ○○지방법원 ○○등기소 20○○. ○. ○.

접수 제○○○○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.

- 3.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소외 ●●●는 담보물을 교체 로 하고 피고에게 소외 ●●●의 숙부되는 소외 ◆◆◆의 ○○시 ○구 ○○동 ○○번지에 있는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마쳤고, 이 사건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당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주기로 소외 ●●●와 피고가 합의하였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○○지방법원 ○○등기소 20 ○○. ○. 집수 제○○○○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2호증

합의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위 귀중



부동산의 표시

- 1.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-○○ 대 157.4m²
- 1. 위 지상
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주택
 1층 74.82m²
 2층 74.82m²
 지층 97.89m². 끝.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☞소멸시효일람표 www.kgc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
- 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